

생활속의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방향†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Consumer Safety Policy in Living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Huh, Kyungok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cludes definitions and major issues relating to product safety, and reviews about product safety laws of Korea and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deas for a future governmental policy concerning product safety and the government policies to guide in securing consumers' safety of products. First, we need to set up consumer safety policies and laws dealing with complex consumer safety issues and to integrate existing laws for the safety of products. Second, opening a consumer safety agency and training workers who have relation to the safety policy, as a profession, are necessary. Third, it is required to redefine the product safety guidelines, strengthen the safety policy and to minimize safety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directly. Fourth, each product of the safety management policies must be regularly evaluated and given feedback for improving its effectiveness. Fifth, information gathering, disclosing, and having a feedback system related to product safety should be rebuil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unsafe products. In addition, laws and the aim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being changed to focus on the consumers, control on imported products, collaboration with network and mutual-assistance systems of product safety-related agenc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and taking leading roles in the world are essential.

Keywords : consumer safety,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 product safety policy

I. 서론

전열기과열로 인한 화재, 압력밥솥 폭발,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폭발사고 등과 같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에서부터 수입완구 및 육아용품의 오작동, 사용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품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

준원 중심의 제품안전관리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악·저급 수입제품, 인증대상제의 제품, 인증획득 후 사후관리미비 제품 등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아 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등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전 안전규제는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한국생활과학회 2009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분야별 심포지엄 발표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Huh, Kyungok

Tel: 02-920-7408, Fax: 02-920-2077

E-mail: kohuh@sungshin.ac.kr

중소업체, 수입업체 등의 경우 제품안전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부족하고, 사후제품안전문제 발생 시 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도주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안전치 못한 제품의 급속한 유통, 미인증제품유통확대, 해외구매대행 및 공동구매로 인한 안전미확인제품의 급속한 확산, 안전이 확실치 않은 수입제품의 범람 등으로 인해 제품안전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가문구 및 장난감, 어린이용품 등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적 강제사항인 안전인증검사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문제발생시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정부의 법·제도적 조치 강화, 소비자 스스로의 시장감시확대,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제품안전관리추진 등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소비생활영위,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소비자안전확보, 안전한 제품생산 및 유통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강화, 안전한 시장환경확보는 전 세계 국가 및 소비자들의 일관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학 분야에서 제품안전에 대한 연구 및 조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소비자 지향적 안전관리제도, 실생활과 연결되는 제품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소비자학 분야 학술지나 학회발표자료 등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안전의 개념 및 제품안전관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제품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수행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의 신속위해정보시스템(RAPEX) 등 선진국의 제품안전관리법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향후 제품안전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Ⅱ. 제품안전의 개념 및 주요 이슈 논의

1. 제품안전의 개념

제품의 안전은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 혹은 그 주변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안전함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품으로부터의 위해(harm, hazard)나 위험(risk)을 입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허경옥, 2009). 따라서 소비자안전은 소비자가 여러 위험요인 또는 위해요인으로부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를 의미한다(배순영 외, 2006). 여기서 위해는 제품사용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위험은 제품의 위해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 또는 위해에 의해 피해를 입을 확률(위해확률)로 보기도 한다.

2. 제품안전관리의 주요 이슈

제품의 안전성 수준과 안전인증기준 관련 중요한 이슈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이종영, 2009). 첫째,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유동성이다. 현재 어떤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아니어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되어 향후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될 수 있다. 둘째, 제품의 혜택과 잠재적 위험감수 측면으로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신체적·재산적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피해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안전기준의 변화와 기술수준으로 현재 산업기술로 해당 공산품의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으면 그 산업기술이 비록 일 반화되지 않고 있어도 이 기술 수준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공산품시장과 산업발전을 반영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선정 및 안전인증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제품 안전인증기준을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급속하게 강화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국내 제품시장은 선진 외국의 제품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그렇다고 안전인증기준의 강화 속도를 지나치게 늦추게 되면 후발산업국가가 생산한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3.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정책 수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첫째,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안전규제, 둘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보상이나 해결에 대한 사후피해구제정책, 셋째, 정부의 간접적인 안전규제정책으로써 위해·위험정보의 공개, 넷째,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홍보 등 소비자안전 지원정책 등이 있다.

1) 제품안전을 위한 직접 규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품안전규제 방법은 법적 제한을 통한 안전규제이다(김용희, 1989; 이의선, 2006). 제품의 경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과 같은 법률을 통하여 정부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허가·승인·검사 등을 통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각종 기준을 생산자가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2) 안전사고 사후피해구제정책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정책으로써 제조물책임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있다. 제품위험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원인과 제품 결함과의 인과관계, 제품 사용상의 소비자주의여부, 피해규모의 판단 등에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해 주고 그 결과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3) 간접적 안전규제 : 위해정보 및 안전정보공개 정책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 또는 위해 관련 정보를 기업이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간접적 차원의 안전규제정책 수단이다. 보통 정부는 제품의 품질, 안전, 위해 상태, 리콜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직접 공개하도록 유도 또는 의무화시킨다. 품질 또는 안전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개의 대표적인 방법은 위해정보보고제도를 통한 정보교류 및 공개, 표시규제를 통한 주요 정보 공개 등이 있다.

4) 소비자안전지원정책: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예를 들면 안전인증제도, 사후안전관리제도 등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제품안전 관련 사전·사후규제 수단들은 정부 행정의 실패 등 비효율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병선, 1989). 제품위험의 본질이 거래당사자 간의 비대칭적 정보 및 소비자행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소비자안전확보 수단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위험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즉, 제품의 위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또는, 민간단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전한 제품구매, 사용, 처분에 대해 홍보 또는 교육시키는 것이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Ⅲ. 제품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고찰

1. 제품안전 관련 법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공포되었으나(2008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 개정),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제품안전과 관련한 단독 일반법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제품안전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법과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 또는 제품안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산업표준화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다. 제품안전 관련 개별 법규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개별 제품에 따라 안전 관련 법규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운송차량법」, 「약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있다.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안전검사기준, 안전검사의 표시, 개선·파기·수거명령, 공산품 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소비자안전 관련 법 비교

	소비자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안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능력향상 · 기본/시행계획수립 ·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 · 단체/소비자원업무 · 취약계층보호 · 소비자안전센터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 종합시책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 위생교육 · 교육
안전규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의 방지 · 계량및규격의 적정화 · 표시의 기준 · 광고의 기준 · 소비자 분쟁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등 · 안전인증의 표시 등 · 자율안전확인표시 등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등 · 안전인증의 표시 등 · 기타전기용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과 규격 · 표시기준 · 식품영양표시및 교육홍보 ·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감시정책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의 방지 ·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 소비자원의 업무 ·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소비자안전센터설치 · 검사와 자료제출 등 ·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대상공산품신고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신고 · 안전성 조사 · 공산품위해사고예방협력 · 보고 및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등 · 안전검사 · 보고 및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평가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 출입, 검사, 수거 등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품질관리 및 보고 ·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사후시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청 등 · 물품등의 자진수거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 위법사실의 통보 등 · 시정조치 등 · 시정조치의 요청 등 · 피해구제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사용 등의 금지 · 안전인증 등의 취소 · 판매, 사용 등의 금지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 ·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미표시 전기 용품 판매, 사용금지 ·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 개선, 파기, 수거 명령 등 · 안전인증 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정지, 폐쇄, 면허취소 · 위반사실의 공표 · 위해식품, 병육 판매금지 · 기준, 규격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판매금지 · 유독기구 판매, 사용금지 · 위해식품 회수, 시정명령, 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 공표 · 시설의 개수명령 등

출처: 기술표준원(2007). 제품안전관리기본체계 구축방안연구(저자 재정리).

2. 소비제품안전 관련 업무 기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 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등이다.

이 외에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사단법인)가 전기제품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전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

파연구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자파환경인증(EMC), 전기용품안전인증(EK)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단체로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있다.

3. 제품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사전안전관리제도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¹⁾ 안전표시 등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도는 주로 공장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증획득 후 제품안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과제로 남게 된다.

2) 기술표준원의 사후안전관리제도

기술표준원에서는 신속조치제도, 제품안전자율이행 협

1) 자율안전확인 제도(SDoC:공급자 적합성 선언)란 공인시험기관에서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확인받은 후 동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제조(수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표 2> 기술표준원의 주요 제품안전관리제도

기준	공산품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안전품질표시	신속조치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인증
대상 품목	18개 품목	47개 품목	14개 품목	법정의품목 발생시	7개 품목	247개
심사 내용	공장심사+제품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신고			어린이보호포장 후 판매	
인증 면제	-연구·개발·수출목적 제조·수입 -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보건법조항 등	안전인증과 동일			-공산품제조업자에게 판매목적 제조·수입 -연구·개발·수출목적 제조·수입	국제규격(ICE)에 의해 시험된 CE성적서 제출
사후 관리	안전인증 표시 등, 판매·사용 등 금지	자율안전확인표시 등, 판매·사용 등 금지	안전·품질표시, 거짓 안전·품질 표시금지 등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판매 등 금지	시관품조사 정기검사
인증 마크						
행정 조치	판매중지, 개선수거과기 명령	안전인증과 동일	안전인증과 동일	시정 권고	안전인증과 동일	개선수거과기 명령
벌칙	-3년 이하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안전인증과 동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과 동일	안전인증과 동일	안전인증과 동일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안전인증과 동일	5백만원 이하		안전인증과 동일	5백만원 이하

출처: 기술표준원(2008). 전기용품안전인증, 궁금증 풀어드립니다(저자 재정의).

약제도, 시관품조사, 제품안전 모니터링, 리콜제도 등을 통해 제품안전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시 판매중지, 개선·수거·과기권고 등을 물론 리콜명령, 징역, 강력한 수준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리콜제도 운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후제품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렵다. 한편, 최근 수입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모니터링, 시관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7).

IV. 주요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미국, EU 등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사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자기적합성선언(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사후 위해문

제 발생시 리콜, 강력한 징벌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에서 품질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소비제품안전법(CPSA)」, 「소비생활용품안전법」 등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전담기관 설립, 통일된 안전기준 제정, 위해제품 시정조치 등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소비자안전제도의 기초가 되는 위해정보수집 체계에 있어서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병원 및 위해정보보고기관과 유기적인 위해정보교환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사업자의 위해제품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위해정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기준강화와 위해제품유통 근절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연합,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비교는 <표 3>과 같다.

한편, 위해정보시스템은 제품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배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을 비교

<표 3>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EU 연합	일본	중국
관련 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제품안전법, 연방유해물질법, 독성방지포장법, 가연성설유법	일반제품, 안전지침 CE마크제도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중국강제인증제도
대상 품목	강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CE마크 (21개 품목군)	· PSC마크(등산용 로프등 6개 품목)	CCC마크(135개 품목)
	임의			· SG마크(129품목) · ST마크- 완구	
적합성 평가	출고(통관)전안전검사	자기적합성선언	자기적합성선언 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인증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관품조사/현장검사	시관품조사/정기검사	정기검사	현장검사
리콜요건	안전기준위반여부/중대 제품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여부/중대 제품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특정제품 또는 가정용품	

출처: 기술표준원(2006). 공산품위해정보 분석연구(저자재정리).

<표 4> 국가별 위해정보제도 비교

운영	한국(CISS)	미국(NEISS)	유럽(EU-IDB, RAPEX)		일본(PIO-NET)
운영 주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	EU DG SANCO	EC(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CPSA(Consumer Product Safety Act)	유럽의회 Regulation 45/2001	The Directive on General Product Safety 2001/95/EC	소비제품안전법
수집 채널	· 65개병원/19 소방서 · 자체수집시스템: 소비넷, 안전넷, 핫라인 · 국내외정보	· 6병상 이상 24시 간응급실 운영 전국 97개 총화표본병원	· EU 국가별로 선정된 병원의 응급실	· 유럽 EU 가입국가 및 EEA 국가(30 개국)	· 언론정보 · 사업자 · 소비자 · 지자체 · 소방서 · 경찰서
수집 영역	· 제품/서비스, 시설물 위해/손상 · 위해/손상가능성 위험/결함정보	· 응급환자들 손상정보	· 응급환자 손상정보: 가정/여가활동중발생	· 각국의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결과 정보	· 제품사고정보 · 위해/손상가능성 위해/결함정보
data 수집	· 인적사항 · 위해내용/원인/장소 · 위해발생시활동내용 · 치료기간 · 위해품목 · 위해부위	· 성별, 나이, 지역, 인종 · 위해내용/부위 · 위해정도/발생장소 · 위해발생시 활동내용 · 치료기간 · 위해품목			
활용	· 사업자시정 · 안전기준제정/기준 · 잠재적위해심층조사 · 정기조사	· 사업자 감독 및 시정 · 안전기준제정/기준 · 잠재적위해심층조사		· 정보시스템	· 사업자감독/시정 · 안전기준제정 및 기준 보완

출처: 기술표준원(2007). 각국 제품안전정책 기준 · 동향 한눈에. (저자 재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1. 미국 CPSC와 CPSC

미국은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법(CPSA: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제정하여 소비자안전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CPSC는 안전정보제공, 안전기준, 신제품검사, 수입품, 수출품, 민사벌, 형사벌,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을 하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강창경 외, 2003; 김성천, 2005).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위해감축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 예를 들면, 화재, 중독사고, 어린이안전 등 특정 위해요인별 또는 취약 집단별 위해요인규명, 체계적 관리, 위해감축 목표 수립 및 방안 모색 등으로 지난 30년간 공산품 관련 사망률을 30%나 감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김현주, 2006). 또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해정보수집(제품수거 포함)이 용이하다. CPSC의 조사 및 단속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불만신고에 대한 세부조사 실시
- 안전표준 및 규정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리콜 협의)
- 안전위해제품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 부과
- 안전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CPSC 현장감시요원(Field Officer 130명, 60개소 근무)의 단속 및 보고

미국 소비자안전 업무 중 벤치마킹할 만한 대표적인 것은 위해정보시스템이다. CPSC는 전국전자상해감시시스템(NEISS: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망증명서, 심층조사, 전국화재사고보고 시스템, 핫라인, 소비자 불만, 언론정보, 기업이 제공한 제품결함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6).

한편, 2004년 CPSC는 자체 조직으로 국제협력부(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 Intergovernmental Affairs)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강제안전기준 개발 시 주정부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전략 수립 및 시행, 주요 수입품 제조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여 외국 제조사들의 제품안전경영 촉진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허경옥, 2008). CPSC는 미국 주요 수입 항구에 조사원을 파견하고, 전국 주요 세관에 상주시켜 CPSC의 제품안전표준을 강화하고 조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입제품의 감시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CPSC 수입감시부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대중국 대응전략이다(허경옥, 2009).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 2005년 미·중 제품안전회담 개최, 중국 제조사 협력·감독·강제적 역할 증대 등 대표적인 성과이다. 또한, 외국 제품안전업무 담당기관 11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 부서는 대미수출업체(중국)에는 미국의 수입품 안전관리제도를 비디오로 제작 공급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정보 상호교환,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 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CPSC에서는 제조자들(수입/유통/판매상) 대상으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조·취급 소비제품의 규제 관련 정보제공, 안전표준 및 판매허가 관련 지원, 인증서 및 시험결과보고서 준비 관련 안내, 안전위해 가능성에 대한 CPSC 보고 의무에 대한 안내 등이다.

미국 CPSC 활동에서 벤치마킹할 또 다른 것은 효율적인 리콜제도의 운영이다. 미국의 리콜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리콜조치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리콜절차 중 벤치마킹 할 부분은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리콜 사실을 연방 관보 및 CPSC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CPSC 회원에게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유럽연합

유럽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안전관리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신속한 위해정보수집제도인 RAPEX(Rapid Alert System of Consumer Product)이다. RAPEX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30개국(EU 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정보에 대한 신속경보시스템이다. EU의 일반 제품의 안전에 대한 지침(GPSD: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에 RAPEX의 기본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EC에서 각 회원국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RAPEX 지침을 정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8). RAPEX는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전기용품, 화장품, 옷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RAPEX의 정보흐름체계를 살펴보면, 유럽의 개별 국가에서 위해제품이 발생한 경우 위험의 종류, 시판품 조사, 위험시험, 위험평가 등의 내용을 자국의 RAPEX Contact Point에 알려주고, 여기서 생성된 안전 관련 정보는 다시 유럽위원회의 집행위원회로 전달된다(기술표준원, 2007). 집행위원회(Commission)에서는 제공된 위해정보를 가지고 제품의 위해성여부를 판단한 후 위해성 결과를 RAPEX System 상의 공표를 통해 유럽 각국의 RAPEX Contact Point 로 빠르게 전파시킨다. 그 후 RAPEX Contact Point에서는 자국의 위해제품존재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제조치를 강구하게 되는데, 유럽 각 나라들의 위해존재여부 및 제제조치 내용이 RAPEX System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보고된다. 한편,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국가에 알리고, 해당 국가의

RAPEX Contact Point 에서는 집행위원회에 즉시 보고 (나머지 절차는 위와 동일)한다. 결국, RAPEX의 성공적 운영 조건, 즉 RAPEX 의 효율적 운영은 집행위원회와 각 국가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별 국가는 위해 제품 발견시 집행위원회에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매주 위해정보에 대한 내용을 website(www.ec.europa/rapex)에 공표하고 있다.

최근 RAPEX의 대표적인 성과는 중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기술표준원, 2008). 제품위해성에 대한 RAPEX의 공표건수 중 중국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2006년 1월 DG SANCO와 중국의 AQSIQ는 MOU를 체결하였다. MOU 체결이후 중국의 AQSIQ는 RAPEX 로부터 제품위해정보를 즉각 제공받고, 중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이행사항을 3개월 마다 RAPEX에 통보한다. 최근 2006년부터 2년간 중국산 위해제품에 대한 RAPEX 공표건수 중 약 절반(53%: 수출제한 32%, 감시강화 10% 등) 정도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성과가 있었다.

유럽 RAPEX는 체계적인 위해정보망 확충이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려 주며, 국제 간의 제품안전망 연계 및 협력 체계가 중요함을 알려 준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아시아 위해정보망 구축, 세계 국가와의 위해정보망 구축이 중요함을 알려 준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EU차원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회원국 안전규칙의 균일화를 도모하는 입법을 개시하였으며, 1993년부터 소비자의 안전·위생·건강·환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 조건을 준수하는 제품에 통일된 CE 마크(Conformité Européenne Mark)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 일본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정책 수행을 위한 대표적인 근거법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이다. 별도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제(특정 제품의 지정 등), 민간의 자주적 노력 촉진(제품안전협회의 설립)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태현, 이진숙, 2008). 첫째, 국가에 의한 안전성 규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특정제품을 지정한 후 안전기준을 정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표시가 부착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사업무는 국가검정기관 외에 일본제품안전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본제품안전협회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수출검사기관 등 민간의 검사기관의 협력을 얻어 사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간 차원에서 자주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였다. 일본 제품안전협회는 국가의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검정 등의 업무,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업무 및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업무,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험조사 및 정보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제품안전협회는 소비제품안전(위해정보수집·전달·시험평가 등, SG마크운영), 화학물질 관리(위해화학물질 정보 수집·전달·시험평가 등), 바이오 기술(바이오기술개발, 안전기준개발 등), 적합성 평가(적합성평가기준 개발, 적합성평가 업무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 및 안전에 특히 위험을 끼칠 요소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자기적합성확인 및 제 3 검사기관의 검사·신고로 통해 PSC(Product Safety Consumer)마크 부여하고 있다. PSC 인증은 자기확인 및 제3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신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이다. NITE는 제품안전, 화학물질관리, 바이오기술, 적합성평가, 네 가지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써 일본 경제산업성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한다(임남혁, 2008). 생활용품의 안전, 화학물질의 안전 등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생활안전, 화학물질관리, 적합성 인정, 바이오테크놀로지 4개 분야를 관할한다. NITE의 현장조사 권한은 경제산업성의 법시행과 관련하여 제조 및 사업자 대상의 현장조사 권한을 의미한다.

V. 소비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제품위해를 최소화시키고 소비자안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이 절실하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품안전 법제도의 정비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품안전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비제품안전기본법(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제품안전전담기관 신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공산품, 전기제품 등 소비제품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법 명칭 및 법 규정에서 ‘공산품’ 용어 대신 ‘소비제품’, 용어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안전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공산품보다 소비제품용어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소비제품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은 법적 규정에서 안전관리대상을 공산품에 한정하고 있는데 제품안전의 범위를 공산품의 개념보다 소비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품안전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증 및 표시대상 이외의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사후관리 등이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제품안전이 위협당하는 대상제품은 인증 및 표시대상 이외의 제품(예: 수입제품, 저가조약상품 등)이거나 이미 인증이나 표시를 한 제품의 사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향후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표준원의 징벌적 배상 명령권, 민·형사상의 행정적 조치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리콜제도를 포함한 사후안전관리제도의 다양한 수단(예: 신속조치제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그 활동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증 및 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안전관리 규정 강화, 인증획득 후 일정기간 경과시 시판품조사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규정 신설, 사후안전 자율확인(안전자율확인 대상 제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의무사항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업무 평가수행 및 분석에 대한 법적 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도지사의 제품안전행정조치(예: 수거 또

는 파기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시도지사의 공산품안전관리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평가결과 공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수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2. 제품안전 전담기관 설립 및 전문기관 양성

제품안전을 전담할 전문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안전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새롭게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현재 존재하는 제품안전협회, 소비자안전단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소비자안전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소비제품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제품안전 관련 행정업무를 강화·확대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강력한 권한부여가 검토되어야 한다. 기술표준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사 및 리콜권고권한 외에 추가적으로 불량위해제품의 수거 및 파기명령권, 징벌적 과징금 부여, 민·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행정권한 부여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안전전문기관이 신설될 경우 소비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피해보상 관련 법·제도적 권한 및 업무확대, 소비제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안전교육 및 홍보, 각종 소비자안전지원 업무가 추가 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제품안전관리제도 방향의 재정립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안전 관련 규제는 최소화시키되, 사후안전관리의 철저함은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전관리제도를 선진국 형으로 혁신시켜야 하는데, 안전위험성이 큰 품목은 안전인증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되,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기시켜야 한다. 제품안전인증 등 사전규제는 줄이되, 자율안전확인제도 확대, 신속대응체제구축,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관리 촉진, 사전규제 최소화에 대응하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업자책임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제품안전사후관리체제 정비,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리콜제도의 효율적 운영, 결함 또는 불량안전제품에 대한 집단피해 소송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안전인증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후관리문제, 안전인증 관련 시료채취비용 및 검사비용의 업체 부담, 검사거부 업체 및 불합격제품의 계속적 판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부족, 검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

4. 제품안전관리정책의 정기적 평가, 분석, 피드백

제품안전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분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정책에 피드백 시켜야 한다.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의 실패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 안전 관련 제안·시행된 각종정책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조사·분석해 보아야 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 중 보다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향후 정책개발에 피드백 되도록 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인증기준 등에 대한 경제성 분석, 안전확보성과에 대한 경제적 실익 분석이 시급하다. 안전사후관리제도의 실제 성과, 경제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안전정책관리수립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반영(예: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를 안전인증대상 품목선정 및 기준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5. 제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

제품안전관리정책 및 법제도 구축에서 위해정보·제품안전정보 정책이 우선중요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시장친화적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는 제품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위해정보의 수집 및 활용, 사후 시장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수집의 경우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아이디어, 의견, 안전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다양한 채널(인터넷,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상담 기관에서 축적된 소비자상담 정보나 고객클레임 data를 활용하는 방안,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에서 소비자들이 올린 토론 글이나 소비자 목소리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지향적 안전관리법제도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시장감시 및 시정조치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위해정보시스템, 위해정보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 중요하다. 미국의 CPSC, 유럽의 RAPEX 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위해정보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정책 및 제도 수립이 시급하다.

한편, 다양한 기관이나 채널, 다양한 방법, 광범위한 영역을 통한 소비자정보수집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 위해정보분석 결과의 효율적 공개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병원·소방서 등 전국의 위해정보보고기관을 정해 두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소방서 등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안전정보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안전정보수집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안전 또는 위해정보 수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안전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기업의 고객상담실, 소비자단체의 각종 상담, 인터넷에서 소비자들 간에 오가는 정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처리·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6. 소비자지향적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개발 및 운영

소비자지향적 제품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기술 표준원의 소비자지원업무 강화, 소비자의 의견취취 및 정책에의 반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품안전기준 설정 등 제품안전정책 수립, 현장검사, 공장검사 및 점검 등의 과정에 소비자참관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제조·유통에 치중하는 제품안전정책에서 소비·사용과정을 중시하는 안전정책으로 전환·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의 안전한 사용 및 소비를 위한 매뉴얼 제작,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의 안전관리정책 도입 및 실행 필요하다.

둘째, 인증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체감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안전욕구와 안전관리성과를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 소비자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자안전욕구에 능동적 대응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증기준과 검사방법을 검토·홍보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안전 관련 각종 홍보 및 안전교육, 체험기회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제품 안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홍보,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제품안전사고 및 제품위해에 대한 조사, 분석, 교육 및 홍

보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참여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 마련, 시책 도입, 프로그램 시행 등에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예: 소비자감시단, 모니터링제도)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시장감시에 직접 참여하는 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비자에게 상금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상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적정한 수당 지급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안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결합정보나 위해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소비자위해나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필요도 있다(김성천, 2005).

넷째, 정부의 소비자안전제도 및 시스템, 안전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비자교육이 절실하다. 정부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비자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7. 수입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확대

수입제품으로 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 안전관리정책의 강화 및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제품으로부터의 안전문제는 불량·저가 수입제품, 인증 받지 않은 수입된 어린이용품이나 완구류 등에서 심각하므로 수입제품의 안전만을 특별히 다루는 정책이 시급하다. 수입제품안전과 관련한 세관, 국세청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불안전수입제품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조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제품의 경우 전수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수입제품 안전정보 시스템 가동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제품, 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수입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해현황분석을 수행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8. 제품안전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조체제

정부 기관, 사업자, 소비자 간의 제품안전협력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안전관리정책의 신뢰성 제고, 안전정책의 효과적 실행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첫째, 소비자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불만조사, 제품의 직접 조사, 소비자피해상담사례 수집, 언론 등에 공표된 사건 수집 및 분석, 인터넷 상의 댓글, 안티사이트, 동호회 등에 올려진 불만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이 협력체제에서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시장감시단 구성에 일반 소비자, 대학생, 주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하고 시장감시방법을 시판조사, 모니터링, 인터넷 상의 사이트, 표적감시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위해 제품 생산 및 유통, 위반사항 등의 정보가 소비자 그리고 시장내 급속한 전파시스템을 통해 시장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위해제품 유발 기업 명단 공개, 안전인증 불응 기업공개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 사이트 활용,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단체, 학교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시판품조사 및 제품안전성 공동시험, 안전표준 개발 및 적용의 협조, 안전사고율 감축을 위한 정책 공동 개발, 유치원, 초·중고, 대학과의 협력체제를 통한 생활속의 안전확보, 제품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각종 공모전, 체험전, 캠페인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품안전 전문가 양성, 국제적 안전표준설정 및 업무수행, 국제전문가 양성, 유통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안전협력이 가능하다. 게다가,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언론과의 공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언론사와 제품안전캠프 개발, 언론사와 공동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조사 등 각종 정보교류 및 언론 공개가 가능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 업무수행 및 신속한 행정조치 등에 소비자단체, 학교, 언론 등의 협조가 시급하다. 현재 리콜 등 제품안전 관련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조사 및 단속성고가 미흡하여 불법제품, 위해제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위해 제품의 신속한 리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교 등과의 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공동구축 및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 직원, 소비자단체 근무자, 대학 전공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모니터링 및 시장감시활동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행정 관련 시범·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제품안전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9. 국제기관 및 주요 국가와의 공조 및 선도적 역할

FTA의 확산 등 소비의 국제화, 개방화, 글로벌화의 추세에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주변 국가와의 공조를 꾀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불법제품, 불량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 행정체제에서의 선진적 체제구축이나 운영이 필수적이다.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세계시장에서 모범적이어야 하며,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안전기준 및 제도적 기반을 국제기준으로 통일시키고 표준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및 공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안전위해제품 수출국(중국, 베트남, 태국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국가간 상호인증제도(mutual recognition) 구축, 해외 현지지역에 안전검사기관 설립 및 안전검사관 파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EU의 LAPEX 시스템, 미국 CPSC와 중국과의 MOU체결 및 활동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안전관리법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VI.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법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안전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제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향후 제품안전관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제품안전관리정책 관련 법제도 및 업무추진체제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여러 법에서 규정된 안전 규정을 종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소비자제품안전법(가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분산된 안전업무를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부처나 전문기관을 설치해 두고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안전정책이 사전인증제도 중심의 규제수단에서 소비자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소비자안전지원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비용과 이익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계속되는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에 피드백시켜야 한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안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하다. 여섯째,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곱째, 수입제품안전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제품안전 관련 기관의 공조체제구축이 시급하고 상호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세계 안전 관련 기구와의 공조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안전관리법제도의 강화로 국제무대에서의 선도적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논의한 안전의 개념 및 주요 이슈, 각국의 제품안전관리법제도 고찰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안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비자안전, 정부안전규제, 제품안전정책.

참 고 문 헌

- 강창경. (1997). 소비자안전법 비교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 한국소비자보호원.
- 강창경, 정순희, 허경옥. (2003). **소비자 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 김기욱, 허경옥, 정순희, 김혜선. (2001). **소비자와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 김성천. (2005). **서비스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김용희. (1989). 소비자상품안전을 위한 규제분석틀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213-223.
- 김현주. (2006). **소비자위해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문태현, 이진숙. (2008). **일본의 소비자정책추진체제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 배순영, 김성천, 이기현, 김현주. (2006). **소비자안전체감지**

- 수의 개발 및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의선. (2006). 제품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국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이종영. (2009). **제품안전관리의 이론적 이해. 제1회 제품안전관리 민관합동워크숍**. 기술표준원.
- 임남혁. (2008). **NITE 안전관리 전략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안전정책개발 워크숍 자료**.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정책국.
- 최병선. (1989).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28(1), 179-210.
- 허경욱. (2000). **정보사회와 소비자**. 교문사.
- 허경욱. (2008). **제품안전사후관리효율화방안연구 - 제도개선 및 전담기구운영 등**. 기술표준원.
- 허경욱. (2009). **대학강좌용 제품안전개론 개발**. 기술표준원.
- 기술표준원. (2006). **공산품위해정보 분석연구**.
- 기술표준원. (2006). **소비자·기업 속으로 가까이 간다**.
- 기술표준원. (2007). **각국 제품안전정책 기준·동향 한눈에**.
- 기술표준원. (2007).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 공청회 자료집.
- 기술표준원. (2007). **소비자안전모니터링 제도**. 기술표준 64호, 50-54.
- 기술표준원. (2007). **제품안전관리기본체계 구축방안연구**.
- 기술표준원. (2008). **전기용품안전인증, 금금증 풀어드립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소비자위해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

접 수 일 : 2009. 12. 17.
수정완료일 : 2010. 03. 02.
게재확정일 : 2010. 03. 10.